

대 학 원 학 칙

제정 2004. 09. 08.
개정 2014. 12.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대학교에 특수대학원인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두며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개정 2014.12.01>

1. 문화예술대학원 :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창작이론과 실기를 교수하여 고급 문화예술체육인력을 양성한다.
2. 문화·영상창업대학원 : 문화·영상산업 창업에 관련한 이론과 실기를 교수하여 실무위주의 문화·영상산업 창업인력을 양성한다.
3.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이론과 실기를 교수하여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를 양성한다.<신설 2007.09.17>

제3조(학위과정) ① 특수대학원인 문화예술대학원과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각 대학원에 학과와 전공을 둘 수 있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

② 각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 및 전문가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계약학과 등) ① 각 대학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산업교육 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전공과 산업교육특별과정 등(이하 "계약학과"등 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신설 2009.01.06.>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01.06.>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두는 입학정원(계약학과포함)은 [별표 1] 과 같다.<신설 2009.01.06.><개정 2012.09.01><개정 2014.12.0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③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대학원 입학 총 정원내에서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수업연한·재학연한·수업방법

제5조(수업연한)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

제6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

제7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야간, 주말주간, 계절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주간에 수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년도·수업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도) 각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수업주수) 각 대학원의 수업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제1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2. 개교기념일(5월 17일)
3. 국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 ② 비상재해 기타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제1항 휴업일의 변경 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보충수업을 과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등록 및 수강신청

제1절 입학

제11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각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13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② 일반전형은 서류전형, 면접고사, 전공과목에 대한 필답고사 또는 실기고사(예능계에 한함)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③ 편입학자격, 재입학자격 및 시행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외국인학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16조(등록) ①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의 학생은 4학기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제5조의 수업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

③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은 교육과학기술부령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7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 소정의 기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장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18조(휴학) ① 질병·군입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휴학은 등록한 학생에 한하며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휴학은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방학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유학·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정하여진 기일 내에 복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2.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 된 자
5. 학력 및 경력이 허위로 판명된 자
6.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한 자

제6장 교과와 학점·전공변경

제22조(교과과정 및 교과목) ① 학생은 교과과정에 정한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과정 및 교과목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교과과정 외의 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은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청강할 수 있다.<개정 2005.03.02>

제23조(수료요건) ①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 수료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

② 수료자에게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① 교과의 이수는 학점단위로 하고,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등급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은 수업시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A	B+	B	C+	C	F
점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이하
평점	4.5	4.0	3.5	3.0	2.5	2.0	0

제25조(편입생 및 재입학생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재입학한 학생의 이미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국내외 다른 대학원의 수강 및 학점인정) ① 본교 대학교 각 대학원 및 타 대학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동일 강좌의 수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대학원별로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전공의 변경 및 전과) 동일학과 내에서의 전공의 변경 및 동일계열 내에서의 전과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학사과정과의 연계) <삭제 2009.06.01>

제7장 학위청구논문

제29조(논문의 지도) ① 학생은 선정된 지도교수로부터 연구계획서제출 등 논문 또는 작품발표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또는 작품발표지도 및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논문 또는 작품발표지도를 받는 자는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논문지도교수) 논문 또는 작품발표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개정 2007.09.17>

2. 학문영역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타 대학 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 할 수 있다.

제31조(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논문의 제출 및 대체)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논문 외에 유형의 결과물로 된 형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해당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대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논문의 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 관련한 교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위원的人数은 3인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장 학위수여

제34조(학위수여) ① 각 대학원별 각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같음하여 석사학위청구 작품발표회 또는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대학원별 석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학위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개정 2009.01.06.><개정 2012.09.01><개정 2014.12.01>

제35조(학위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장 학생활동, 장학금, 포상과 징계

제36조(학생활동 및 학칙준수) ①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연구 등 대학원의 기본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학원학칙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③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대학시설을 이용하여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장학금 등) ①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8조(포상 및 징계) ① 학업성적이 뛰어나거나 품행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제10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위탁생, 전문가과정

제39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혹은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깊이 있게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9.06.01>

제40조(연구과정) ① 제12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학위와 관계없이 특정한 교과목 또는 과제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의 연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학기단위로 한다.

③ 연구과정의 입학생은 필요에 따라 소정의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정은 연구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 수료생 중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호]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본 대학원의 연구생의 이수한 동일과목에 대하여 본 대학원에 입학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인정을 할 수 있다.

제41조(위탁생)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제41조의2(전문가과정) ① 각 대학원은 학위와 관계없이 전문가과정을 개설하며,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전문가과정의 재학연한은 1년 단위로 한다.

③ 전문가과정 입학생은 필요에 따라 소정의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장 대학원 조직 및 대학원 위원회

제42조(조직) ① 각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운영책임교수 및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5. 03. 02.><개정 2009.01.06.>

② 각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③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학과 또는 전공의 학사업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3조(위원회) ① 전체 대학원의 학사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03.02>

②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03.02>

제43조의2(구성 및 임기) 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교학지원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과 교학지원처장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조신설 2012.03.02>

제44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03.02>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연구과정·위탁생·전문가과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6. 학칙 및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8. 학생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각 대학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다만, 전체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조정 심의 할 수 있다.<항신설 2012.03.02>

제44조의2(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조신설 2012.03.02>

1. 제44조 제2항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기타 각 대학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위원회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장 학칙개정

제46조(학칙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 학칙의 개정을 위하여 학칙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칙심의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교학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 각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03. 02.><개정 2009.01.06>

제47조(학칙의 개정) ① 이 학칙은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개정한다.<개정 2007.09.17><개정 2012.03.02>

② 전항의 학칙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장 준용규정

제48조(준용규정) 대학원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대학교학칙과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4. 9.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학칙의 폐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예술대학원학칙의 학위과정별 학과(전공)은 이 학칙에 의한 학위과정별 학과(전공)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예술대학원학칙에 의한 당해 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문화예술대학원 스포츠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전공명칭변경에 따라 체육전공 재적학생으로 본다.

부 칙 (2005. 03. 0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9. 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모집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3조(문화예술대학원 전공분리,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음악전공 재적생은 제27조의 전공변경 회수제한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분리 및 신설된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음악전공 재적생 중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재적생은 음악전공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예술경영전공 재적생은 졸업 때까지 예술경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문화영상창업대학원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5조 수업연한과 제23조 수료학점은 변경은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01. 0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6. 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3. 0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9. 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문화예술대학원 무대예술전공 재적생은 졸업 때까지 무대예술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신설, 명칭변경, 통합) 문화예술대학원 전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설, 명칭변경, 통합한다.

1. 문화예술대학원에 문화재보존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아동음악전공, 뮤지컬전공을 신설한다.
2. 문화예술대학원 방송제작전공을 방송영화전공으로 변경한다.
3. 문화예술대학원 영상디자인전공을 영상콘텐츠전공으로 변경한다.
4. 문화예술대학원 미술전공과 조형미술전공을 통합하여 미술전공을 둔다.

제3조(대학원 통합) 문화예술대학원과 문화영상창업대학원을 통합하여 문화예술대학원으로 한다.

제4조(학과신설) 문화예술대학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를 신설하고 전공을 둔다.

1. 미술·문화재보존학과 :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2. 체육학과
3. 문화영상창업학과

4. 영상엔터테인먼트학과 : 방송영화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5. 공연음악학과 : 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아동음악전공, 음악치료전공, 뮤지컬전공

제5조(대학원 및 전공 통합,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재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문화영상창업대학원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영상창업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② 문화예술대학원 조형미술전공 재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조형미술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술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③ 문화예술대학원 방송제작전공 재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방송제작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영화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④ 문화예술대학원 영상디자인 재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영상디자인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콘텐츠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별표 1]

대 학 원 입 학 정 원 표

○ 대학원 입학정원(2015학년도)

캠퍼스	대학원	석사과정		
		계 열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양주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엔터테인먼트학과 방송영화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 공연음악학과 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아동음악전공 음악치료전공, 뮤지컬전공 	40
임실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문화재보존학과 미술전공, 문화재보존전공 ▶ 체육학과 ▶ 문화영상창업학과 	25
	사회복지대학원	인문사회	사회복지전공	20

<개정 2014.12.01>

[별표 2]

대 학 원 학 위 수 여 종 별

○ 대학원 학위수여 종별

대학원	석사과정		
	학과	전공	학위
문화예술대학원	영상엔터테인먼트학과	방송영화전공	영상학석사
		영상콘텐츠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학석사
	공연음악학과	음악전공	음악학석사
		실용음악전공	
		아동음악전공	
		음악치료전공	
		뮤지컬전공	
	미술·문화재보존학과	미술전공	미술학석사
		문화재보존전공	예술학석사
체 육 학 과		체육학석사	
문 화 영 상 창 업 학 과		창업학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

<개정 2005.03.02.><개정 2007.09.17.><개정 2009.01.06.><개정 2012.09.01><개정 2014.12.0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전공)석사과정을 이수
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작품)심사에 합격하여 ○ ○학 석
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문(작품)제목 :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전공명칭)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년
()월간 ()을 전공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학위 ○○○ (인)

공개강좌 이수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원 공개강좌과정에서 ○○○○년 ○월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

제 호

연구 실적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연구과정에 ()을
연구하고 그 실력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인)